

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6. 9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홍복조 의원 외 7인(박정환, 안대국, 박왕규, 김화덕, 이신자, 김태형, 배지훈)
- 발의일자: 2021. 5. 6.
- 회부일자: 2021. 5. 28.
- 상정 및 의결: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1. 6. 9.)

2. 제정이유

달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, 구민의 책무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다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
- 라. 지원사업(안 제7조)
- 마.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, 복지단체의 보호·육성(안 제8조, 안 제9조)
- 바.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(안 제10조)
- 사. 복지시설의 확충 등(안 제11조)
- 아. 사무의 위탁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1. 5. 20. ~ 2021. 5. 31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현행 「장애인복지법」·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·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다수의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는 독립적 자립(自立)생활을 함에 있어 일정부분 애로가 있는 장애인들 역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는 적절한 수준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, 달서구 역시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」 등 일련의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.
- 동 조례안은 상기와 같은 취지에서 현행 상위 법률인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‘지적장애인’· ‘자폐성 장애인’ 등(이하 “발달장애인”)에 대해서는 보다 특화된 일련의 ‘종합 복지서비스(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7조·안 제8조)’를 구 차원에서도 제공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.
-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, 현재 이들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 및 지원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운영 중인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130여 곳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달서구 차원의 동 조례 제정이 오히려 때 늦은 점이 있으며, 다음으로 조례안 개별 조문들을 각각 살펴볼 때에도 상위법령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바, 동 조례 제정에 대해 특별히 논란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